

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

##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

(앞쪽)

납세의무자

① 상호 또는 법인명:

② 사업연도: 년 월 일부터

③ 사업자등록번호:

④ 대표자 :

년 월 일까지

국외특수관계인

(⑤ 단위: 원)

⑥ 명칭				
⑦ 소재지(주소)				
⑧ 사업연도	~	~	~	
⑨ 주업종	( )	( )	( )	
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				
⑪ 특수관계의 구분				
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	소유	계: %(직접 %)	계: %(직접 %)	계: %(직접 %)
	피소유	계: %(직접 %)	계: %(직접 %)	계: %(직접 %)
계정과목	코드			
I. 매출액	01			
II. 매출원가	02			
III. 매출 총손익	03			
IV. 판매비와 관리비	04			
V. 영업손익	05			
VI.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	06			

유의사항

\*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I.~VI.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

## 작성방법

1. ①~④ :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2. ⑤ :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(최초 고시)을 적용하며, "평균환율"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른 매매 기준을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을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.  
※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([www.smbs.biz](http://www.smbs.biz))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
3. ⑥~⑩ :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4. ⑪ :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5. ⑫ :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.
6. ⑬ :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  - 가.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50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가목): "지배"로 적습니다.
  - 나.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50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나목): "피지배"로 적습니다.
  - 다.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의 50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): "자매"로 적습니다.
  - 라.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): "실질 지배"로 적습니다.
  - 마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: "본점 · 지점", "해외타지점" 등으로 적습니다.
7. ⑭ :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.
  - 가. "소유"란에는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.
  - 나. "피소유"란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.
  - 다. "계"란에는 직접소유(피소유)비율과 간접소유(피소유)비율을 합한 총소유(피소유)비율을 적고,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.
- ※ I ~VI: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- ※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.